

의안번호	제 399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7월 일 (제 282 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필용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7월 일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9
------------	-----

발의연월일 : 2009년 7월 2일  
 발의자 : 이필용, 연만흠,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장주식  
 조영재의원(7인)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이 신설되어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설치와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의용소방대 도입에 따른 자격기준, 여성대원의 충원, 연령 고령화에 따른 대원의 정년 기준 조정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변경.
  - 조례명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로 개정
- 나.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
  - 전문의용소방대 도입근거 마련하고,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의 정원을 정례화 함.(안 제2조제4항, 제6조제3항)

- 대원(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정년을 65세로 정례화 함.(안 제10조제3항)
  - 면지역 의소대의 정원의 1/3이하로 여성대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 대장의 임기개시일을 상반기 1월1일, 하반기 7월1일로 정례화 함.(안 제11조제2항)
  -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 중 출동대기 근무시간을 연1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의용소방대의 자율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피복 등 지급품을 소방서장이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 유족보상금에 대한 보상액수의 정액화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
  - 성과중심의 보상을 위해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 경비지원, 초상 등 차등부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 2)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목적 조항 약침 금지에 따라 약칭을 정함(안 제2조)
  -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 그 밖에, 및, 또는, 인, 이외, 기타 등의 자구를 알기쉬운법령 정비체제에 맞춤.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소방본부)
- 다. 예산조치 :
- 라. 규제심사 :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의2까지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 읍·면별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와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읍·면지역 : ○○소방서 ○○ 읍·면 의용소방대

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③ 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 ○○ 지역대"라 한다.

④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소대의 표지) ① 의소대의 표지는 의소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 ② 의소대 기의 도안, 기,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 ③ 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은 별표 2와 같다.

##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조직) ①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 ②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③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제6조(정원) ① 시와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의 정원은 60명으로 하되,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면지역의 경우 의소대(여성대 포함)의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여성대가 없는 면의 경우에는 대원 정원의 3분의 1까지는 여성대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③ 전문의소대와 지역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 ④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소대장, 여성대장, 전문의소대장, 지역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부대장("의소부대장, 여성부대장, 전문의소부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업무분장)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의 편제와 업무 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임 면

제9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이하 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지역대원을 포함한다)은 소속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임용기준) ① 대원(의소대원, 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지역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2.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4.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자

② 제2조제4항의 전문의소대원 임용기준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이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 분야 자격
4. 사회복지 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 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③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1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번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대장의 임기 개시일은 상반기는 1월 1일, 하반기는 7월 1일로 한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소속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 신규대원의 입대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업무관련 전문 자격증(전문의소대원에 한정한다)
-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4조(해임사유) 임용권자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

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과 출동(동원)에 불참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기시간이 연 8시간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이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15조(신분증명) ① 대장은 도지사가,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관할 소방서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임용권자는 신분증명서 발급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대원(퇴임한 대원 포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대원은 화재 취약 시기나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연 16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 의 봉사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경우에는 복무와 근무방법 등을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이나 그 밖에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 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 위치 등 세부 규격서는 규칙으로 정하며, 단화·활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② 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과 사용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며, 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④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복제는 소방서장이 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복무점검)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점검은 제21조제4항의 교육·훈련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나 소방학교장(중앙소방학교장이나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대장, 부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등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자녀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의소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의소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의소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출동수당)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소방서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24조(활동보조비 등) ①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와 시·군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소방사 10호봉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신체장애 등급이나 신체장애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제28조(장제보상)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나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 보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재해보상 청구) ①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상청구는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에 따라 재해를 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 도지사나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와 대원 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등의 지원이나 각종 포상기회를 차등부여 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관리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연합회는 시·군연합회 대표로 구성하며, 시·군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③ 도연합회장은 시·군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시·군연합회장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

⑤ 도 및 시·군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에 따른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원 복지향상
2.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이나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 도는 도연합회와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시·군연합회가 시·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의 의소대에 대한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제3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대원(대장,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대장, 부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만료일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로 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소방기본법

####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비상근)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9조의2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 ·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17]

(별표 1)

의용소방대 기(제4조제2항관련)

## (1) 도 안



## (2) 기

- 규격 : 기 ..... 가로 110cm, 세로 75cm  
휘장 ..... 가로 65cm, 세로 31cm  
수실 ..... 길이 8cm
- 색상 :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지질 :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 (3) 깃발

- 규격 : 무궁화깃봉 ..... 지름 6cm  
깃대 ..... 길이 180cm, 직경 2.5cm
- 재료 :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반침대 ..... 철재

(별표 2)

### 의용소방대 표지(제4조제3항관련)

(1) 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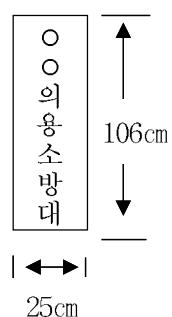
(2) 규격

- 새 매 의 크 기 : 가로 90cm, 세로 58cm
- 횃 불 의 크 기 : 가로 9.3cm, 세로 14cm
- 태 양 의 크 기 : 원외경 37cm
- 소방호스 의 길이 : 길이 43cm

(3) 재 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 현 판

- (1) 두께 : 3cm
- (2) 지질 : 목재
- (3) 색 : 판 - 담홍색, 글씨 - 흑색



(별표 3)

## 신체장애등급표

등급	신체장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5.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6.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6. 한팔을 팔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7. 한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li> <li>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6. 한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ul>

등급	신체장애
3	<p>7. 한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p> <p>8.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p> <p>9. 한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p> <p>10.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p> <p>11.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p> <p>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4	<p>1. 한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p> <p>2. 두퀴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들지 못하는 사람</p> <p>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p> <p>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p> <p>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p> <p>7.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사람</p> <p>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p> <p>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11. 한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12.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p> <p>13.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p> <p>14.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p> <p>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p> <p>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p> <p>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p>
5	<p>1.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p> <p>2.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p> <p>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p>

등급	신체장애
5	<p>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p> <p>7. 두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p> <p>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을 잃은 사람</p> <p>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p> <p>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p> <p>12.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사람</p> <p>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6	<p>1. 한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p> <p>2.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p> <p>4.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p> <p>5. 한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p> <p>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p> <p>7.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p> <p>8.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p> <p>9. 8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p>

등급	신체장애
6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7.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1. 기타 제1급 내지 제6급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14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 신체등급별장애보상

등급	보상금
1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100/100
2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88/100
3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76/100
4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64/100
5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52/100
6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40/100

(별표 4)

### 순직자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표

근무년수	보상금
10년 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9년 이상 10년 미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9년분
8년 이상 9년 미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8년분
7년 이상 8년 미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7년분
6년 이상 7년 미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6년분
6년 미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

## 【별지 제1호 서식】

입 대 원 서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 ·녀

위 본인은 소방서( 군 읍 ·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고자 입대를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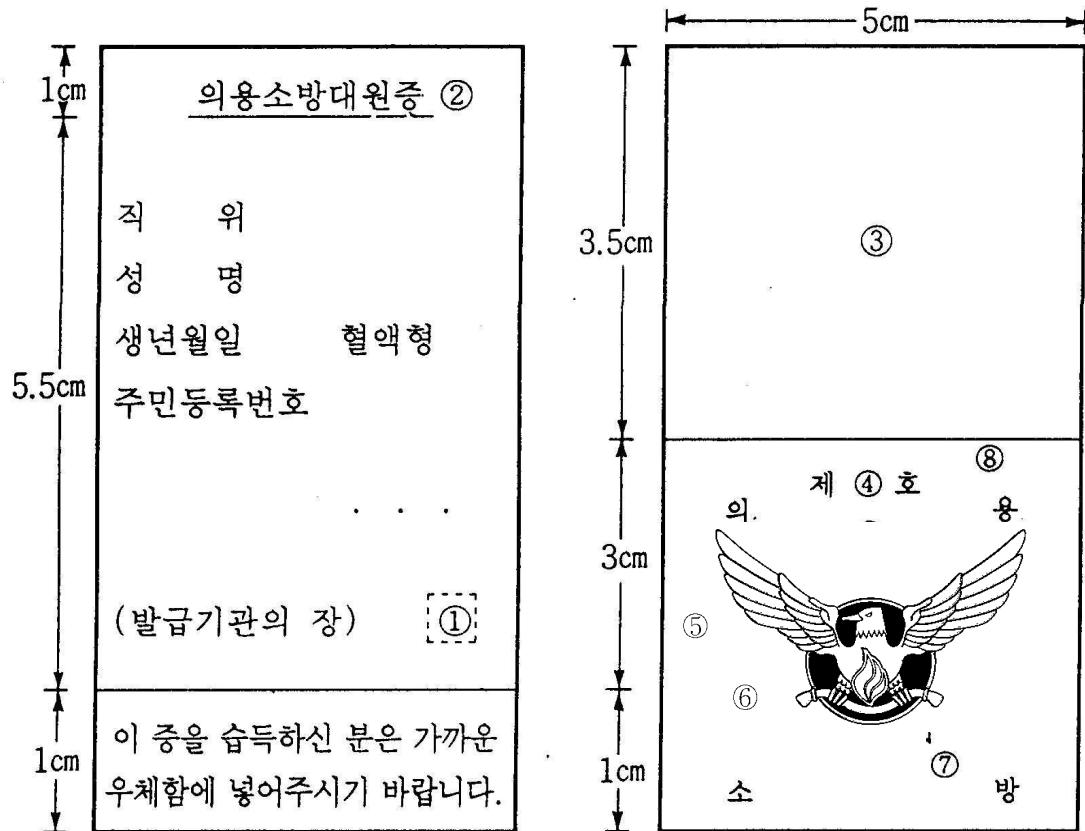
추천인	직	성명	⑩
-----	---	----	---

귀하

(신문용지 190 cm×268 cm)

## 【별지 제2호 서식】

## 신 분 증 명 서



(전면)

(후면)

① 발급기관의장 및 직인

② 계인

③ 사진(5cm×3.5cm)

④ 신분증번호

⑤ 소속(○○의용소방대)

⑥ 성명

⑦ 발급기관명(소방서단위)

⑧ 철인

※ ④⑤⑥⑦은 흑색 모필로 기재

구 분	내 용	도 형
지 질	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m <sup>2</sup> 으로 한다.	
제 식	<p>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cm×세로 7.5cm로 한다.</p> <p>2. 후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mm의 얇은 연두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p> <p>3. 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 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cm×세로 5mm ×굵기 1mm)</p> <p>4.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日前 6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5cm×세로 3.5cm로 한다.</p> <p>5. 신분증은 피 · 브이 · 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 포장하여 발급한다.</p>	
관 리	<p>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받아야 한다.</p> <p>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 【별지 제3호 서식】

##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소 속	직 책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최 종 직 책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인)

### 【별지 제5호 서식】

##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 요양보상청구서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 직 성명 (인)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대장 (인)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장 애 보 상 청 구 서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 소재지

##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 직 성명 인

1. 장애 발생년월일
  2. 장애명
  3. 청구금액 및 장애등급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대장 (인)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장 제 보 상 청 구 서

1. 소속(주소)
  2. 성명
  3. 부상 또는 발병년
  4. 사망년월일
  5. 장제보상청구금액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 청구자 주소 및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 ※ 1. 유족이 청구할 때에는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내연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장제를 행한 자가 청구할 때에는 장제사실의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유족보상청구서

- |                |    |      |   |   |   |
|----------------|----|------|---|---|---|
| 1. 소속(주소)      | 성별 | 생년월일 | 년 | 월 | 일 |
| 2. 성명          |    |      |   |   |   |
|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    |      |   |   |   |
| 4. 사망년월일       |    |      |   |   |   |
| 5. 사망장소        |    |      |   |   |   |
| 6. 사망경위        |    |      |   |   |   |
| 7. 유족보상금 청구금액  |    |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인

위 상위없음을 확인.

년 월 일

대장 인

소방서장 귀하

- ※ 1. 사망진단서 · 유족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2.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내연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